

대구지방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3065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억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3. 17.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가소5240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소위 ‘십장(오야지)’이라는 지위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인력들을 현장에 투입시켜 노무비를 받는 형태로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D 주식회사(2019. 7. 25.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D’이라고 한다) 명의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8. 5. 14.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린 피고와 그 중 습식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공사 장소: 경산시 G 외 1필지(H)

○ 착공일: 2018년 5월 14.일, 준공일: 2018년 6월 14.일

○ 계약금액: 42,440,000원(부가가치세 2,440,000원 포함)

다. 원고는 D 명의의 I조합 계좌에서 F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6. 29.

22,000,000원, 2018. 10. 24. 20,440,000원 합계 42,44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F로부터 면허세, 세금 등을 정산한 나머지 금원을 노임비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미장, 방수, 조적 공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10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공사대금으로 선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선지급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실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은 19,868,700원(면허세, 세금 포함)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선지급한 공사대금 중 실제로 지출한 공사대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1,300원(= 40,000,000원 - 19,868,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후에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 ② 피고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19,868,7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호, 판사 이경한, 판사 박소영